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-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-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를 제41조로,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제52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-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를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, 제112조를 제121조로, 제137조를 제146조로, 제95조제2항을 제104조제2항으로 변경함(안 제5조)
- 법 제36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으로 변경함(안 제6조, 안 제12조)
- 법 제36조제5항 및 영 제17조의4제4항을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 제4항으로 변경함(안 제10조)
- 법 제37조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변경함(안 제13조)
- 제15조를 제16조로, 제16조를 제17조로 변경함(안 제20조)
-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, 제36조를 제41조로, 동법시행령 제17조의4를 제43조로 변경함(안 별표1)

5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